2022년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설명회

2022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운영계획

2022. 02. 10.
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


2022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

목차

1. 사업개요..... 1

2. 사업추진 전략..... 3

3. 세부 지원내용..... 7

4. 선정평가 12

5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5

6. 추진일정 16



1. 사업개요

사업 필요성 및 목적

-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토대로 연구개발 가치 제고를 통한 신산업.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·학 협력생태계를 구축
-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(기술이전 및 실험실 창업) 촉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

사업 내용

-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(TLO)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합 지원하여, 대학 보유 공공 기술 이전.사업화 촉진 및 실험실 창업 등 기업 성장 도모

구분	기술이전(대학 TLO 지원)	창업/기업성장(기술지주회사 지원)
기술발굴	.기술이전 유망 기술 발굴 .기업 수요자 기반 공공기술 매칭	.실험실 창업 후보 기술 발굴
BM 제작	.비즈니스모델(BM) 설계	.창업 비즈니스모델(BM) 개발
사업화	.시제품 제작/시험·인증/디자인 지원	.R&BD(제품화, 양산화) 지원
마케팅	.국내·외 기술마케팅	.공개투자 유치, 제품 판로개척 등 기업 창업 (실험실, 자회사) 설립.성장 지원

사업 추진 근거

-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

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

제16조(기술개발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5조

제11조(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)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기술이전·사업화의 지원,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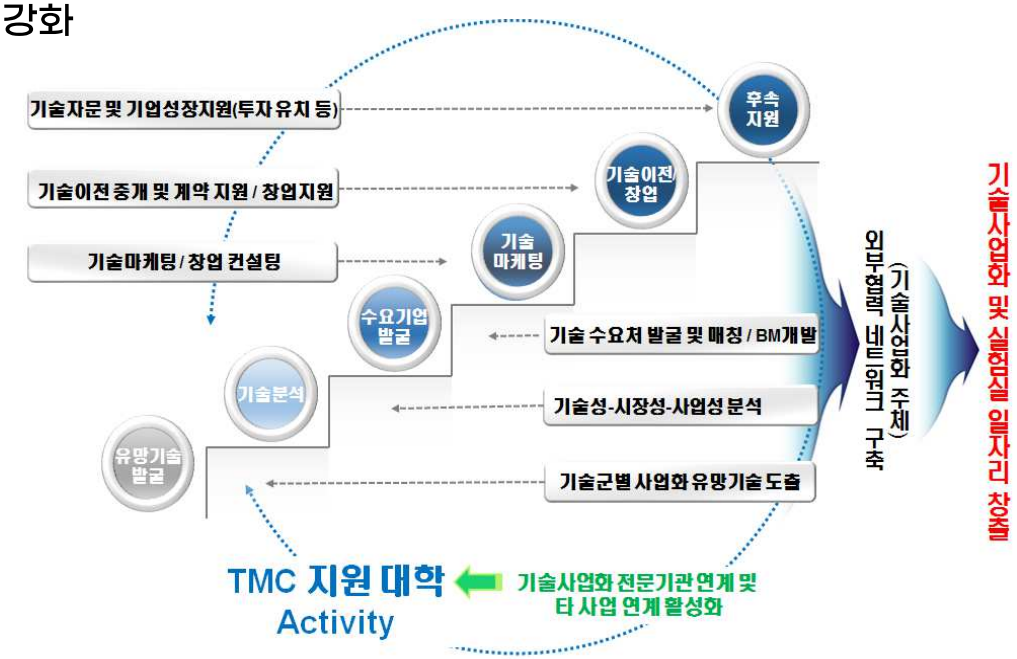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
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

2. 사업추진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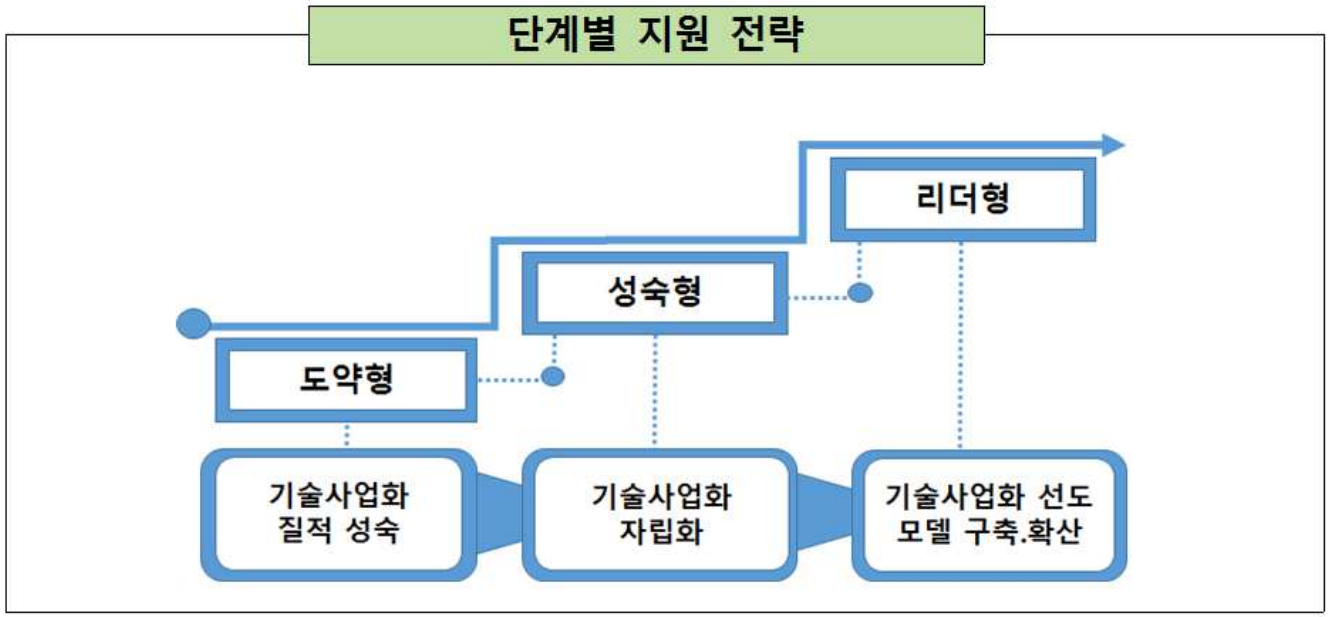
중점 추진 방향

- 대학 보유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혁신 선도하는「연구성과 사업화 리더형 선도 대학」육성.확대
- 대학 역량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자립화 기반 마련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
- 기술 사업화 촉진 및 실험실 창업 기업 성장 지원 강화
- 기술사업화 공동 지원 프로그램 강화



중점 추진 내용

- 기술사업화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
  - 기술사업화 역량을 Level-Up 할 수 있도록 **대학 역량별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(도약형→성숙형→리더형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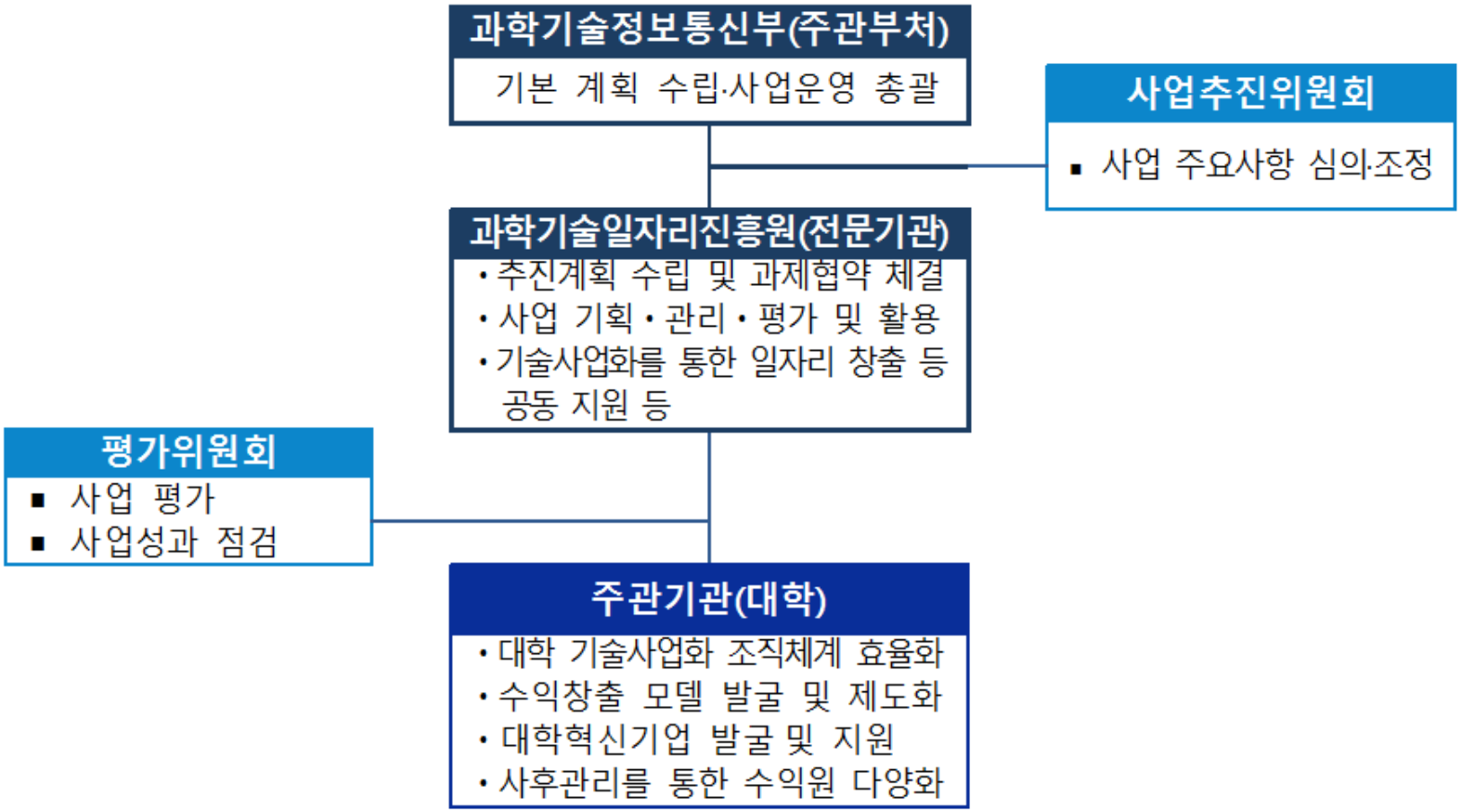


중점 추진 내용

- 단계별 지원 중점 추진 내용
  - **(리더형) 기초·원천 연구성과**의 **사업화** 및 **전담조직 구조혁신**을 선도하는 **'연구성과 사업화 리더형 선도대학' 육성.확대**('21~)
    - 기술사업화 **조직 구조 혁신** 및 **제도 정비**를 통한 기술사업화 · 창업을 리드할 수 있는 **선도 모델 구축** 및 他 대학으로 공유 · 확산
    -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(TLO, 기술지주회사 등)을 중심**으로 대학간(또는 대학 內) **강점 분야에 대해 시장 친화적 대형성과 창출**
  - **(도약 · 성숙형)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** 지원을 통한 **대학 보유 공공기술 이전 · 사업화 촉진** 및 실험실 창업 촉진

- 기술사업화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
  - **수요자(기업) 니즈 기술을 발굴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매칭 시범 운영** 등 창업지원플랫폼 고도화 추진
  - **대학 실험실 기술 기반 Uni-Tec 데모데이 개최** 등 대학 실험실 창업 활성화 유도
  - **TMC 협의체 구성.운영** 등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
  - **공동 마케팅, 교육(컨설팅)** 등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

2. 사업추진 전략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관부처)
기본 계획 수립·사업운영 총괄
사업추진위원회
▪ 사업 주요사항 심의·조정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(전문기관)
•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협약 체결
• 사업 기획 • 관리 • 평가 및 활용
• 기술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지원 등
평가위원회
▪ 사업 평가
▪ 사업성과 점검
주관기관(대학)
•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체계 효율화
• 수익창출 모델 발굴 및 제도화
• 대학혁신기업 발굴 및 지원
•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원 다양화

3. 세부 지원 내용

지원 목적

- 기술 사업화 자립화 단계로 진입하여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구조 혁신**을 선도하는 **'연구성과 사업화 리더형 선도대학' 육성**

당해 지원 규모 : 과제별 8억원 내외(2개 과제 내외)

* 단계평가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시 3년간 지원

당해 지원 기간 : '22. 4. 1 ~ 12. 31 (9개월)

* 상기 과제 총 사업기간 : '22. 4. 1 ~ '24. 12. 31 (1+1+1년)

추진 내용

- **기술사업화(창업 포함) 조직 구조 혁신**(유관 조직간 유기적 연계 · 융합) **및 제도 정비**를 통한 **연구성과의 사업화 가속화** 추진

  * **교원업적평가**개선(기술이전·사업화성과비율↑등),**산학협력단(TLO)**조직 전문성 강화 등 **대학 자구노력 수준**을 평가하여,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에 반영

- 성숙된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(TLO, 기술지주회사 등)을 중심**으로 대학간(또는 대학 內) **강점 분야에 대해 시장 친화적 대형성과 창출**

  - 他 **대학간 특화 분야를 중심**으로 **상호 보유 자원** 및 **사업화 역량**을 결집하는 **'기술·제품별 공동 R&BD' 추진시 선정 평가에 상당한 가점 부여**

- 대학 內 창업문화 확산 및 대학 보유 공공기술 기반 **실험실 창업 (교원, 학생) 활성화**

3. 세부 지원 내용

주요 수행 내용(안)

구분	주요 내용
기술사업화 및 창업 조직 · 제도 개선	• 대학 내 기술사업화 물적·인적 자원의 **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** • 성과 주도形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**내규 등 제도 정비** ※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자체분석보고서 제출 必 • **TLO 전문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**
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중심의 R&BD 추진	• 국내외 특허 동향 및 시장 분석, 기술 분야별 제품 동향,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**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술 · 제품군 선별** • 기술 · 제품군에 대해 강점 분야별로 **대학 간(또는 대학 內) 연계·융합하여 기술사업화 로드맵* 제시** * 대학간 연계시 상호 기술자산 실사, 기술-제품 포트폴리오 구축, R&BD,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**사업화 가능성 사전 검증** •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주도하에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"시장친화형"** 기술사업화 추진
실험실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	• 유망 기술 발굴부터 우수기술 발굴, BM 수립/IP 재구성/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, 대학(원) 재학생 대상 창업 실무능력 배양, 예비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, 투자유치 등 **실험실(학생, 교원) 창업 활성화** 추진 등 • 성장잠재력 높은 **대학혁신기업*** 집중 육성 * 대학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교원창업 등을 포함 • 후속 투자유치, R&BD 연계 등 기업성장 지원 후 지분매각, 배당수익 등을 통한 **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**

3. 세부 지원 내용

(도약.성숙형 지원)

지원 목적

-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(TLO)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합 지원하여, **대학 보유 공공 기술 이전.사업화** 및 **실험실 창업 촉진**

당해 지원 규모 : 40.38억원 (13개 과제 내외)

구분	도약형	성숙형
과제수	6개 과제 내외	7개 과제 내외
정부출연금(과제별)	2억원 내외	4억원 내외

* 유형에 따라 지원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수 및 사업비 등 조정 가능

당해 지원 기간 : '22. 4. 1 ~ 12. 31 (9개월)

* 상기 과제 총 사업기간 : '22. 4. 1 ~ '24. 12. 31 (2+1년)

추진 내용

- 단계별 제시된 목표에 따라 대학 특성에 맞게 기술이전・사업화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・운영
- 대학(또는 대학간)은 전략 분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포트폴리오 구축,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**특화프로그램 추진**

3. 세부 지원 내용

(도약.성숙형 지원)

단계별 목표(안)

- (성숙형) 기술사업화 자립화

-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마련, 기술사업화 전문성 및 출구전략 강화
  (특화기술 집중 사업화, 엑셀러레이터 기능 강화, 지분매각/인수합병/주식상장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)
-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사, 운영지원, 조직, 외부 협력, 재원 마련 등 지원 강화 및 온・오프라인을 통한 성과 활용.확산

- (도약형) 기술사업화 질적 성숙

- 기술수요 발굴 및 창업지원 과정 개선점 도출, 기술사업화 교육 등 기술사업화 전문성 강화
- 대학/컨소시엄 간 협력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(사업 노하우 학내 이식)
- 기업수요 고부가 유망기술 후보군 발굴 및 BM 타당성 검증 강화
- 성장잠재력 높은 자회사(고부가·고수익 기술 보유 등) 집중 육성

3. 세부 지원 내용

지원 조건(안)

- (TMC유형) 지원조건에 맞춰 리더형은 단독 참여로 구성하며, 도약.성숙형은 신청기관의 자율 선택 가능하여 단독 참여(대학기준) 또는 대학 간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

구 분		유형별 구분 기준		
		리더형	성숙형	도약형
지원 기준	수익원천 (기술료수입+지분매각)	20억원 이상	15억원 이상	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
정부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		15% 이내	15% 이내	20% 이내
특화프로그램 비중		50% 이상	40% 이상	30% 이상
매칭펀드 비율		30% 이상(현금비중 : 리더 30%, 성숙/도약 10% 이상)		

※ 유형에 따른 세부조건 등은 공고문 참조

4. 선정 평가

사업공고

- (공고기간) 2022. 1.28(금) ~ 3.3(목) (33일간)
- (제출기한) 2022. 2.28(월) ~ 3.3(목) 16시 까지
- (제출서류) 공문 1부, 신청서 10부 및 증빙서류, 전자파일(한글, pdf 각 1부) * 이메일(idea@compa.re.kr) 및 오프라인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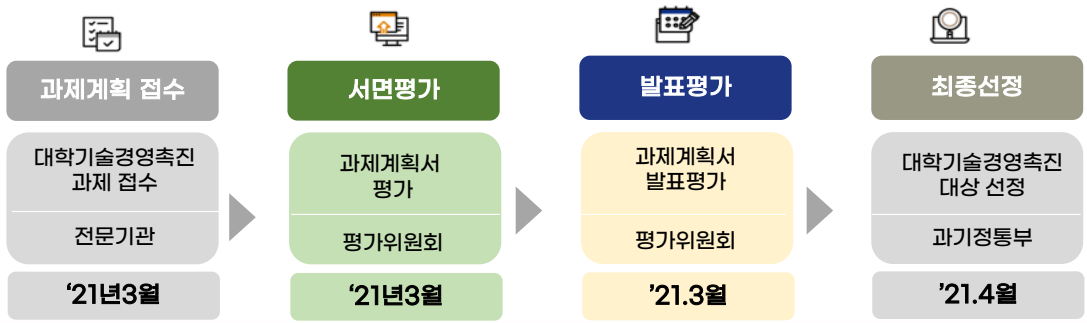
선정평가(안)

- (서면평가) 1단계 평가(2배수 내외)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**2단계 평가(대면), 3단계 최종 선정**하여 지원 과제 선정

- 주관기관 소재지에 따라 5개 권역*으로 나누어 권역 표기

*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충청권(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), 호남제주권(전남·전북·제주·광주), 대경강원권 (강원·경북·대구), 동남권(경남·부산·울산)

- (선정 절차) 서면평가(1차) → 대면평가(2차) → 사업추진위원회 심의.확정, **총 3단계 절차로 진행**



4. 선정 평가

평가항목(안)-리더형

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성평가 (70)	사업 추진 역량	▪ 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추진 역량 ▪ 기술사업화 인력의 전문성 ▪ 기관장의 기술사업화 추진 의지	10
	기술사업화 조직.제도 개선	▪ 대학 내 물적・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계획 적절성 ※ 단계적 조직혁신 계획, 선도모델 공유·확산 계획, 기술경영 관련 관리 계획 등 ▪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내규, 관련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정비 계획 ▪ 대학(원) 재학생 창업 실무능력 배양 ※ (예시) 대학(원)생 졸업 요건에 창업교과목 이수 여부 포함	15
	대학기술 경영활동	▪ 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전략	15
		▪ 실험실창업기업(대학혁신기업) 성장 지원	
		▪ 대내외 협력 촉진	
	프로그램 운영	▪ 유망 기술 및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(창업포함)까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▪ 대학 간(또는 대학 내) 강점 분야에 대해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중심의 기술·제품별 R&BD 계획 적절성 ▪ 예산 집행활용 계획의 적절성 ▪ 우수 성과모델을 他 대학으로 확산 계획 등	25
		▪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의 우수성 및 대표성	5
정량평가 (30)	인력(공통사항)	▪ 기술사업화 인력 평균 근속년수, 전문/전담 인력 수	10
	기술이전	▪ 3년간 기술이전 건수, 기술료 수입 등	10
	기술창업	▪ 3년간 창업기업 수(자회사, 실험실창업 등), 신규 고용인력, 매출액 등	10
합 계			100

※ 他 대학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'기술·제품별 공동 R&BD' 추진 시 가점 부여
※ 세부지표는 공고문 참조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는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
4. 선정 평가

평가항목(안)-도약.성숙형

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성평가 (70)	사업 추진 역량	▪ 기술사업화 조직 목표의 구체성 ▪ 기술사업화 인력 및 전문 역량 우수성 ▪ (컨소시엄)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계획의 구체성	10
	사업화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	▪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의 구성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▪ 대학TLO 자립화(효율화) 전략의 우수성 ▪ 사업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▪ (컨소시엄)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	15
	대학기술 경영활동	▪ 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전략	20
		▪ 실험실창업기업 성장 지원	
		▪ 대내외 협력 촉진	
	프로그램 운영	▪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활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-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활용 기술사업화 자립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- 대학(원) 재학생 대상 창업 실무능력 배양 등	20
		▪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의 우수성 및 대표성	5
정량평가 (30)	인력(공통사항)	▪ 기술사업화 인력 평균 근속년수, 전문/전담 인력 수	10
	기술이전	▪ 3년간 기술이전 건수, 기술료 수입 등	10
	기술창업	▪ 3년간 창업기업 수(자회사, 실험실창업 등), 신규 고용인력, 매출액 등	10
합 계			100

※ 세부지표는 공고문 참조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는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
5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지원시 유의사항

- TLO 및 기술지주회사는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 형태로 1기관 1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유형 중복하여 지원 불가
- TLO와 기술지주 통합지원 과제이므로 단독은 주관 산학협력단, 참여 기술지주를 의미함

  * 컨소시엄은 주관 산학협력단, 참여 기술지주, 타 산학협력단, 타 기술지주 등 구성을 의미함

지원제외 대학

- 2021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-0362호)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
-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
서류 제출처 및 문의

- 사업신청서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'일자리정책팀' 제출 ("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" 명기)

  * (이메일) idea@compa.re.kr (주소)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
- 사업문의 :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(02-736-9822)

6. 추진 일정

절차	추진내용	일시	주체
사업공고	사업공고	‘22.1월	과기정통부
▼			
신청서 접수 및 선정	사업계획서 접수	‘22.3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사업평가	지원과제 선정	‘22.3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지원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‘22.4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사업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‘22.4월~12월	주관기관
▼			
연차/단계 평가	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	‘22.12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
감사합니다!
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